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단52053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의 2020. 9. 3.자 금 16,500,000원에 대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백규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및 원고의 확정판결

가. 원고 A 유한회사(변경전: D 유한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 248186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을 득하였습다. (갑제1호증 판결문)

나. 그러나 C은 채권자에 대하여 2022. 07. 11. 현재 원금 100,000,000원, 연체이자 금 243,772,601원의 합계금 343,772,601원의 채무금이 현존하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원리금계산서)

2. C과 피고와의 관계와 사해행위

가. C과 피고의 관계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E과 피고는 지인관계로 추정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습니다.

다. C의 금전증여행위

1) 소외 (주)F(이하 "F"이라 함.)은 C에게 지급하여야 전주지방법원 2017회합 2호 사건의 회생계획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현금변제 채무액 16,500,000원을 대전지

방법원 2020년금 제4799호로 공탁하였으며, 피고는 C의 공탁금출급청구 대리인으로 이를 수령을 하였습니다.(갑제3호증 공탁금출급청구서)

- 2)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위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이 출금된 G은행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이를 입증코자 합니다.

라. 피고와 소외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으며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이사진 채권의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 소결 C은 F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합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